

의안번호	제2602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 3. 23.

#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2
----------	------

발의연월일 : 2023. 3. 23.

발 의 자 : 이쌍자, 김향숙, 김석한,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7인)

## 1. 제안이유

학술용역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학술용역 결과물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다. 학술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마. 학술용역 진행상황, 결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바. 학술용역 결과의 의회 보고,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사. 학술용역 전 과정에 대한 성과점검 및 학술용역성과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9호

- 예고기간: 2023. 3. 27.(월) ~ 2023. 4. 3.(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없음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학술 용역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확인·평가하고 각종 학술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이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재해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4. 시설물의 유지·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학술용역
5. 2천만원 이하의 학술용역
6.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술용역

**제4조(학술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군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학술용역의 기대효과 및 학술용역결과 종합 활용 계획

**제5조(심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용역 심의 요청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해야 한다.

1. 학술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
3. 학술용역의 기간과 수행방법
4. 학술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학술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 등 담당국장, 문화·환경 등 담당국장, 산업·건설 등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각종 학술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학술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유사·연관 학술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군수가 따로 정한 학술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학술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학술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학술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학술용역의 심의 기준 등)**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학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등의 적합성
2. 학술용역의 방식 및 사업계획, 수행기간,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군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학술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보고회 운영의 내실화)** ①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는 해당 학술용역 관련 업무에 정통한 국장·담당관·과장·담당 등 실무자와 군의회 의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학술용역 진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3.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4.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1. 연구 목표의 달성도(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 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예산의 적정 사용 및 계획 일정 부합도 등)
4.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자문 등)** ① 학술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또는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학술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학술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제15조(의회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후 고성군의회에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서면 보고로 할 수 있다.

**제16조(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성과점검)** 군수는 학술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학술용역성과물 관리) 군수는 학술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성과물을 보관·관리하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학술용역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예산에 반영하는 학술용역부터 적용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

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